

2021 - 1453

() ()

- 418 - 1 () -

1.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418-1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7조 및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.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2021년 5월 20일

서울특별시 장

I. 열람 기간 : 2021.5. 20 . ~ 2021. 6. 4. (공고일 다음날부터 15일 간)

II.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: 씨티스퀘어 14층 주택공급과 역세권지원팀 (☎02-2133-6293)

III. 도시·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사항

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
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			(㎡)				
		418 - 1	523,805 (923.9)	-	523,805 (923.9)	2007 - 353 (2007.10.11.)	-

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

1.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2.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3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- ## 2.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

☐ 불허용도(신설)

418-1

－ 결정사유서

☐ 권장용도(신설)418-1

- 결정사유서

- 381 -

	B ()	• ()	418-1

「 2 2

- 결정사유서

418-1	.	.	가
-------	---	---	---

☐ 용도완화(변경없음)

나. 건축물의 밀도(건폐율·용적률·높이)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)

	• 60% ()	• 418 - 1
	• : 500% • : 575% 1)	
	• : 42m	

1) r

－ 결정사유서

-	• : 500% • : 575%		•
	• : 42m		J

다. 용적률 적용기준(신설)

		• : 6% - $923.9\text{m}^2 \times 6\% = 55.44\text{m}^2$	• : 56.91m^2 (6.16%, 7) - 56.91m^2 (6.16%) $\geq 55.44\text{m}^2$ (6.00%)
		• 가 : 50% - : 52.7% - : 486.90m^2	• : 246.27m^2 - 50.00% • : 44.56m^2 - 4.82% (7)
		-	• : 101.47m^2 (10.98%, 14)
	/	• : 85% • : 15% (가)	• : = 94.49% : 5.51% ($4,825.22\text{m}^2$, / 281.14m^2)
		• $18\text{m}^2 \sim 60\text{m}^2$ - 1 () : 18m^2 - 2 : 36m^2	• 1 : 18.04m^2 (76), 18.13m^2 (8), 22.31m^2 (31) • 2 : 37.53m^2 (8), 48.49m^2 (2)
	21	• , , 2가 ,	• ,
		• 100 ~ 300 : 150m^2	• 168.11m^2 (, ,)

「 」

라. 공공기여 계획(신설)

	500%	575%	· : 6% - : 55.44㎡(6.0%)	· 56.91㎡ (6.16%)	
			· : 가 1/2 - : 243.45㎡ ()	· 246.27㎡ (44.56㎡) (4.82%)	-

「 3-2-1

마. 건축물의 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없음)

3.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4.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IV. 관계도서 : 생략 (열람장소에 비치)